서세동점,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 1

√학습해야 할 내용

- ☞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
- ☞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는?
- ☞ 서양의 동방진출이 시작된 배경과 경위 및 과정
- ☞ 19세기 중반 서양의 동아시아 진출이 가져온 변화

1) 화이사상과 중국의 조공제도

- . 화이질서(華夷秩序):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 '중화(中華)'와 '이적(夷狄)'
- 。 동아시아는 종주국인 중국과 속방 또는 번속과의 관계를 조직·관리하는 중국의 조공(朝貢)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즉, 조공-책봉 관계.
 - 중국은 천하의 중심으로서 권위를 높이고 주위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 유지
 - 주변 국가는 중국의 보장 아래 나라를 보전하고 선진 문명 수용
 - 조공과 책봉에는 국가 간 상하관계 존재
 - 중국은 종주국(宗主國), 주위 국가를 번속국(藩屬國)
 - 조공과 책봉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믿음(信)으로 섬기고(事大),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어짊(仁)으로 보듬음으로써(字小), 대소열국(大小列國)이 상호결속과 평화공존을 도모한 외교행위
- 。 1644년 명조(明朝)가 멸망하고 북방 여진족의 정복왕조인 청조(淸朝) 등장
 - 청조의 통치자들은 명조의 문물과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이 주위 국가의 내정과 외교에 직접 간섭하지는 ×

2) 청-조선 조공-책봉 관계

。외교 의례

- 조선에서 새로운 군주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청조에 주청사(奏請使)를 파견하여 황제 의 책봉을 요청
- 황제는 그를 조선 국왕으로 책봉한다는 조서(誥書)를 내리고 책봉사(冊封使)를 서울에 파견
- 조선은 중국 황제가 제정한 역법(曆法)을 사용하고 모든 공문서에는 황제(皇帝)의 연호 (年號) 사용

。무역

- 조선의 사신단 일행이 북경 회동관(會同館)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간 물품을 팔고 중국 물품을 사는 이른바 회동관 무역(사신 무역, 사절단 무역)
- 매년 일정한 시기 양국의 상인들이 국경 지역에 모여 물물교환 형식으로 변방(邊方)무

역

※ 조선과 청은 요충 지역 가까이서 국경을 접했기 때문에 화이질서의 영향을 가장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매년 3,4회나 청에 사신을 보냈고, 청은 조선에 3품 이상의 기인(旗人, 만주족 군인귀족관료)을 칙사로 보냈다. 반면에 월남(베트남)은 10년에 1회 정도 청에 사을 보냈고, 청은 월남에 5품 이하의 기인이나 한인(漢人)을 칙사로 보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청과 멀리 떨어진 일본은 화이질서에서 자유로웠고 사신의 왕래도 없었다. 이런 차이가 근대 이후 각 나라의 국제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서방제국의 동방진출

- 。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유럽의 동방진출 시작
- 。 16세기 유럽의 동방진출을 주도한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 16세기 중엽까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17세기 초까지 이 지역 전 해역에서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고 해상무역 독점
- 。 명나라도 1405년부터 1433년 사이에 일곱 차례에 걸쳐 원정 단행(정화의 원정)
 - 그러나 1433년을 마지막으로 해외 대원정 중단
 - 이후 해안해역에 출몰하는 왜적 소탕을 위한 해군력만을 유지

※명조가 해외 대 원정을 갑자기 그만두고 해군력을 축소한 배후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국방전 략과 문화적 중화사상(中華思想)이 있었다.

- 。 16세기 초 유럽인들이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했으나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식교역보다는 주로 밀무역이나 해적 행위
 - 그러나 이후 중국에서는 국내가 안정됨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고 물자(物資)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해외 통상에 대한 요구가 ↑
 - 연해 지역 주민 중 해외 밀무역에 종사하는 사람 증가
- 。 1685년에 청나라 황제 강희제(康熙帝)는 해금을 해제, 중국 상인들의 해외 도항과 외국 선박의 중국 입항 허용
- 。 청은 1757년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무역을 광주에 한정하기로 결정(광동무역의 시작)

4) 광동무역제도

- , 유럽 상인들은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를 조직하여 광동무역에 종사
- 。 청조가 정한 데로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광주에 있는 상관(商館)에 머물면서 교역
- 。 교역 기간이 끝나면 전원이 마카오로 이동, 혹은 본국으로 귀국
- 。 광주에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었으며 특히 여자들의 도래는 엄금
- , 광주에서는 상관 밖으로 외출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통제

5) 광동무역체제 하 영국

。 영국은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유럽에서 동방과 미주 대륙에 이르는 전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네덜란드가 동방무역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것을 보고, 1600년 영국 동인도회사 설립
- 처음에는 주로 인도 무역에 종사하였다.
- 。 영국 동인도회사가 중국무역을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엽이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산 견직물 과 도자기를 수입.
- 。 영국은 18세기에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속히 성장
- 。 18세기 후반에는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이 광동무역에 참가하였는데 모든 면에서 영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영국과 차(茶, tea), 그리고 관세(關稅)

- 。 영국 상류사회에서 차를 애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었는데, 이때는 주로 네덜란드를 통하여 수입.
- 。 영국 동인도회사가 광동무역에 참가하면서 영국 내 차의 판매가격이 대폭 인하, 18세기 초 부터 국내 차 소비 대폭 증가
-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에 대한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 。 영국 정부는 해외 팽창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 관세를 대폭 인상
 - 그러나 이는 국민의 반세(反稅) 감정을 증폭, 대규모의 차의 밀수입을 초래
- 。 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반대하여 일어난 북미 식민지의 반세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발전 -> 북미 식민지 상실.

근대사 기본 연표

1860년대

1863년 고종즉위(흥선대원군 집권)

1866년 병인박해

제너럴셔먼호사건

병인양요

1868년 오페르트 도굴사건

1870년대

1871년 신미양요

1873년 흥선대원군 퇴진

1876년 강화도조약

1880년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85년 거문도사건

1889년 방곡령

1890년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1895년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1896년 아관파천

독립협회

1897년 대한제국

세동점,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 2

7) 영국과 차(茶, tea), 그리고 관세(關稅

- 영국 상류사회에서 차를 애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었는데, 이때는 주로 네덜란드를 통하여
- 차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광동 무역에 참가하면서 영국 내 차의 판매가격이 대폭 인하. 18세기 초부터 국내
-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에 대한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 의 반세(反稅) 감정을 증폭, 대규모의 차의 밀수입을 초래하였다. 또, 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반대하여 일어난 북미 식민지의 반세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발전, 북미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해외 팽창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 관세를 대폭 인상. 그러나 이는 국민
- 상을 영국이 취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은 증가하는 차 수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를 초 영국은 1784년 과감한 감세(滅稅) 정책을 시행, 19세기 초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의 90% 이
- 은화의 조달에 고심하였다. 은화에 의한 현금결제 - 매년 막대한 은화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서방 무역국들은 이에 필요한
- 。은화 조달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아편무역

- 중국은 아편무역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 。1838년 도광황제는 임칙서를 홈차대신(欽差大臣)에 임명하여 즉각 광동으로 가서 아편 문제를 처리하
- 。 1839년 7월 7일 구룡(九龍)에서 술에 취한 영국 선원들이 임유희(林維喜)라는 중국 농민을 살해한 사 건이 발생 --> 임칙서는 8월에 무력으로 마카오를 봉쇄하고 식량과 연료 공급을 중단 --> 11월 영국 함선과 중국 함선 간에 포격전 발발
- 。 1840년 6월 영국군 광주항 봉쇄, 다음 해 6월 상해 점령

9) 남경조약(난징조약) 켸결

- 광주(廣州), 하문(厦門), 복주(福州), 영화(寧波), 상해(上海) 5항을 개방한다
- 공행(公行)의 무역 독점을 폐지한다
- 공평하고 정규적인 수출입 관세를 설정 공포한다
- 개방되는 5항에 영국영사를 상추시킨다.
- 중영 양국 관헌은 대등한 입장에서 문서를 교환한다
- 홍콩을 영구히 영국에 할양한다.
- 관세율은 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가(從價) 5%를 원칙으로 한다
- 개방되는 5항에 있는 영국인에 대하여는 영국 영사관이 재관권을 행사한다
- 중국은 영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를 부여한다.
- 영국은 개방되는 5항에 군함 1척을 상시로 정박시킬 수 있다.
- 남경조약은 물론 승전국인 영국이 패배한 중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
- 서방 열강이 동아시아 제국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의 효시, 동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침범하고 경제적

으로 약탈하는데 사용된 모든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 아편전쟁은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적 세계질서와 영국인들이 대표한 서구식 국제질서간의 돌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 。 아편전쟁은 중국통치자들의 전통적인 '무역은전론(貿易恩典論)'과 영국 지도자들의 근대적인 '자유무역 론(自由貿易論)'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충돌이었다.

10) 애로우 전쟁과 천진조약(톈진조약)

- 공체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시적 편법이라고 생각. 새로운 조약의 제도를 광동무역제도의 연장 또는 확대로 간주하여 전통적 조 남경조약의 체결이 가져온 근본적인 변혁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이것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 거와 다름없이 모든 교섭을 계속 지방관인 광동총독과 양강총독 관할 하에 두었다. - ex) 남경조약 체결 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북경당국은 영국사절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과
- 애로우호(Arrow號) 사건

1856년 10월 8일 중국관헌이 광주항에 정박하고 있는 홍콩선적의 중국 화물선 애로우호의 선원 12명을 해적혐의로 체포

- 장은 영국인이었으나 선주와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반 - 영국측의 항의, 그러나 양광총독은 애로우호는 영국국기를 게양하고 있지 않았으며 애로우호의 凎
- 애로우호의 홍콩선적등록은 이미 기한이 지나서 무효인 상태였음
- 10월 22일 영국군이 광주시를 공격
- 영국군과 프랑스군 공동출병, 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도
- 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대관들과 대등하게 접촉하며, - 체약국의 외교사절은 가족을 동반하고 북경(北京)에 상주 또는 수시로 왕래하여 청조의 내각대
- 를 추가로 개방하고, 이미 개방된 5항(港) 이외에 우장(牛莊)·등주(登州)·한구(漢口)·구강(九江)·진강(鎭江) 등의 항구
- 할 수 있다. 체약국 국민은 각기 자국영사가 발급하고 중국관헌이 인준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 내지를 여행
- 중국인의 신앙의 자유와 외국인의 선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 중국인의 해외도항을 공식으로 인정한다.
- 청조는 모든 공문서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夷'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 외국인 세무사를 모든 개항장에 설치한다
- 청조는 영국에 400만 냥, 프랑스에 2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배상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
- 지 영불 양국이 천진·등주·대고·광주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 걸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 확립되었다 천진조약의 조인으로 아편전쟁 후 남경조약(1842)에 의해 성립된 조약체제가 20년에 가까운 세월에
- 。 전통적인 중국의 조공-책봉체계는 완전히 사라진 반면, 열강이 힘으로 강요한 불평등조약체제가 확립

김주삼 (2009). 아편전쟁과 동아시아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중일의 대응방식 분석. 아시아연구, 11(3), pp.88-92 발췌

Ⅲ. 중국의 대외인식과 영향

1. 근대화과정에서 대외정세변화에 부적응

1839년에 발발한 아편전쟁은 영국과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최초로 충돌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아편전쟁을 통해 당시 청조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이기도 했다. 영국은 아편전쟁 이전부터 국가체제를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국가형태를 형태적 조직형태로 이미 탈바꿈하였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도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확보함으로써 19세기자체가 영국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규모와 국제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당시 중국의 국가체제와 법, 제도, 경제구조는 서구열강과는 너무나 다른 후진적인 봉건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축적된 자본과 국력은 지난 비인회의 이후 확립된 비인체제를 통해 견고함이 유지되었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개척한 해외식민지로부터의 부의 축적은 더욱 향상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발전은 영국 이외의 서구열강 국가들에서도 변화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반도를 차지하여 식민지지배능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중국에 노련하게 접근을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17세기 청조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시베리아지역 진출 극동지역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영국처럼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태평양지역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도 아니었다. 미국은 1848년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확보함으로써 샌프란시코와 상하이(上海)를 잇는 태평양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신속하게 캘리포니아 서부를 개발하고 급속한 자본주의체제로 발전시켜 미국이 중국시장과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시장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경쟁적으로 해외상품시장쟁탈전에 뛰어들었다.(唐緊興, 2002)

중국은 서구열강의 치밀한 동아시아진출전략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는데, 이는 그때까지 전통적 역량에 대한 과신과 자만이 주요 요인이었고, 서양문물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특히 아편전쟁이 발발한 이후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적 구조개혁에 대한 개혁의지와 발달된 서양문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청조물락을 재촉하게 되었다.

2. 중국개국과정에서의 소극적 수용

아편전쟁 당시 중국은 황제에 통치되는 봉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제정치는 역사 적 흐름에도 대외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겪게 된다. 중국은 당시 전국을 18 개 성(省)으로 구분하여 각 성을 제후들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아편전쟁이후 전략적으로 중국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서구열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중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해, 프랑스 동양외교사 거장인 피에르 르누벵의 당시 분석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피에르 르누벵, 1988).

첫째, 중국인은 외국인을 경계하고 경원시 하며, 기술면에서 외국인의 우위를 인정하나 과 거 서양문명보다 찬란했던 전통적 중국문화에 더 집착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인은 자만심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문화를 무시하는 전통적 유교사상 이 지배적이었고, 외국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모방심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부족했다. 셋째, 중 국인들은 평화적이었으나, 군사적 활동에는 흥미나 존중을 하지않았으며, 서양인에 대한 반응 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애국심도 미미했다.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자리잡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하였지만, 잠재적 배외심에 그친 채, 일반적으로 격렬한 항의행동은 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개혁세력이 무사계급이 주도한 반면 대부분의 관리들은 외국의 영향이 중 국인의 생활에 전파할 변혁을 적대시 하였다. 다섯째, 중국관리들은 개혁사상에 문을 닫아놓 고 있었다. 그들의 지적 형성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전통적 현인의 숭배와 과학의 경멸 그리고 중국의 철학과 중국의 지적우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지배적 사상들은 공사(公私)관계를 명확히하는 서양 사상을 상서롭지 못한 것 으로 간주하고 배제하였다. 여섯째, 청조 정부의 개혁에 대한 수동적 태도와 황위를 계승하는 황제들의 청정부 권한행사 주권자 부재와 황권절대주의 존속이었다. 서구열강의 위협에도 불 구하고 정치제도 개편와 변혁보다는 전통적체제를 유지했는데, 이는 결국 중국근대화에 역행 하였다.

3. 국제조약체결과 영향

1) 청조의 혼란

중국은 아편전쟁의 패배로 영국 난징조약(南京條約, 1942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일방적으로 전승국 영국에 강제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영국은 아편전쟁이 있기 전까지 광동성에 있는 무역항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중국의 쇄국정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아편전쟁이 있기 전까지 영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인식은 위협이 될 정도로 간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영국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

난징조약체결은 영국과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서구 열강과 중국과의 국제 조약까지 이어지는 기화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불평등한 국제조약이었다. 난징조약 체결은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변화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아편전쟁 패배가 중국인들이 서구열강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괴감을 갖게 하면서 이후 청조에 대한 무능 에 대한 반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2) 서구열강의 중국침략 본격화와 혼란

아편유입은 중국의 은(銀)유출을 1820년부터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수입은 약 1840년대에 18,000상자인 것이 그 규모는 1850년대 전후에는 48,000상자로 수준을 초과하여 절정인 188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上田信, 2005).

국제적으로는 아편전쟁을 통해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난징조약을 받아내자 그동안 중국진출에 열망했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 등의 국가들도 중국과의 교역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난징조약을 통해 아편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충분히 받아내고, 5개 무역항을 확보하였다. 이후 텐진조약에서는 난징조약(南京條約)보다 더 많은 10개의 무역항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영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 황제가 있는 베이징에 영국 공사관을 주재시킴으로써 중국 시장의 종속화를 확고히 다졌다.

개 요

T

15세기 말 이른바 '지리상 발견'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인들의 東漸은 시작되었다. 동점의 선편은 포르투갈인들이 잡았다. 그들은 16세기 초엽에 마레이반도의 말라카(Maraca)를 점령하였고(1514), 중엽에 중국 마카오(Macao, 澳門)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1557). 포르투갈인들에 이어 16세기 후반에 스페인인, 17세기로 들어서면서 네덜란드·영국·프랑스인들이 신항로를 따라 동양으로 진출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상품시장 개척과 원료공급지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동양에 있어서 첫 무대는 인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은 이 노대국을 손아귀에 넣었고, 19세기 전반에는 그 세력을 동남아로 확장시켜 나갔다.

영국은 다시 北上하여 중국의 문호를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아편 전쟁(1840~1842)을 일으키고 南京條約(1842)을 체결하여 홍콩(香港)을 할양받고 廣州・上海・厦門・福州・寧波를 개항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영국과 인도 쟁탈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 인도지나반도 경영에 주력해 오던 프랑스도 곧 중국과 黃埔條約(1844)을 체결하여 영국과 동등한 통상상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 뒤 애로우(Arrow)전쟁(1856~1860)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에 天津條約(1858)・北京條約(1860)을 강요하여 開港場을 추가하고 공사관의 北京개설과 內地布敎・通商權을 획득하였다.

러시아인들은 16세기 중엽부터 육로를 따라 동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 초까지에는 시베리아 일대를 러시아화하는데 성공하였고, 다시 19

세기 중엽부터는 동부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에프(Muravyov)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힘입어 중국과 아이훈(愛琿, Aigun)條約(1858)을 체결하여 黑龍江 이북지방을, 북경조약(1860)을 체결하여서는 우수리(烏蘇里, Ussuri)江 이동을 러시아령으로 편입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항을 건설하여 극동진출의근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처럼 러시아 세력이 연해주 일대로 진출한 결과조선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미국도 18세기 말엽부터 태평양을 횡단하여 극동으로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남경조약 성립 직후에 망하조약(1844)을 체결하여 중국 진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페리(Matthew C. perry)제독을 일본에 파견, 이른바 砲艦外交를 벌여 美日條約(神奈州條約, 1854)을 체결하여 일본을 개항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애로우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天津條約(1860)을 체결하여 영국·프랑스와 동등한 통상상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prod

구미 열강의 중국에서의 침략활동은 조선에 전해졌다. 주로 燕行使節(北京 파견사절),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冬至使節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사절들의 보고는 신속하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별로 보잘 것이 없는 피상적인 것이었다. 다만 애로우전쟁 때의 청제[咸豊]의 熱河 피난과 北京 함락(1860)만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 듯, 내용은 부실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서울로 전해 졌다.

이런 사절들의 보고를 통하여 조선측은 아편전쟁이나 애로우전쟁 뿐 아니라 그 밖의 중국에서의 洋夷의 움직임을 어설프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는 서양인들이 邪敎를 전파하여 인심을 陷溺시키고 있으며, 아편이 유입되어 그 해독이 클 뿐 아니라 막대한 은이 유출되고 있다던지, 러시아인들이 北京에 公館을 세웠고, 黑龍江 일대를 그들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19세기 후반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 과정

저자 한승훈

(Authors)

출처 내일을 여는 역사, (25), 2006.9, 257-266 (10 pages)

(Source)

발행처 내일을 여는 역사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733927

APA Style 한승훈 (2006). 19세기 후반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 과정. 내일을 여는 역

사, (25), 257-266.

이용정보 서울대학교

147.46.9.***

(Accessed) 2018/04/12 14: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 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교과서 바로 보기

19세기 후반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 과정

한 승 훈

조선의 문호개방

19세기 후반 조선의 개항은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전까지 조선의 외교·통상정책은 사대교린의 원칙 아래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조선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결코 개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조선의 문호는 1876년 이웃국가 일본에 의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1882년 조선은 서

19세기 후반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 과정 • 257

한승훈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연구원. 논문으로 〈조영조약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 정립〉이 있다. 근대 이후 조선의 외교정책 및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구열강 중 하나였던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1883), 독일(1883), 러시아 (1884), 이탈리아(1884), 프랑스(1886)에게 차례로 문호를 개방함으로 써, 명실 공히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문만 열어준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문호개방의 원칙으로 서구의 근대적 조약체제를 받아들였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 간 기본적인 관계나 통상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합의한 형식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조약을 '국제법의 규율을 따르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했기 때문에,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의 내용이 불평등할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조약체제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된 동일한 기준의 조약들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나타나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특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조약체제에 편입된 국가들은 그 체제가 구성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국가들은 조약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조약의 불평등 유무와 관계없이 그 조약의 내용과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개항을 〈개항과 불평 등조약체제〉라는 제목 아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의 개항을 '통상개화론의 대두'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의 내용' 그리고 '서양 각국과 조약 체결'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과서에서는 주로 조선이 1876년 일본의 무력에 의해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받았던 강화도조약을 강조하고 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되는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 지배로 연결되는 역사의 출발점으로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불평등조약 체결을 주로 다루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만으로 불평등조약체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불평등조약체제가 '체제' 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설명되어야 한다. 먼저, 조선이 편입되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적용되었던 불평등조약체제가 조선에 관철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불평등조약체제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883년 11월 조선과 영국이 체결한 조영수 호통상조약은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 으며,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들이 최혜국대우에 의해서 동일 하게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서술에서는 조선 정부가 불평등조약체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문호개방 정책에 반영했던 과정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876년 시기는 몰라도 최소한 1880년대 초반에 이르면 조선 정부 내에서 근대적 조약체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과서는 불평등조약체제의 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근대적 조약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과정

1881년 초 고종은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된 이현영과 민종묵에게 비밀지시를 내렸다. 그 내용은 일본에 직접 건너가서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과 이에 따른 통상의 상황을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약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문과 통상규칙을 확보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국과 일본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통상조항이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이헌영: 서양 각국의 (수입)세율은 물품값의 10~30퍼센트이고, 심지어 100~200퍼센트인데, 일본만이 물품값의 5퍼센트인 것은 오직 서양나라들이 정한 규정에 따르고 자주권을 내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통상 (수입)세율을 정함에는 자주권을 잃지 않고서야 해를 받을 실마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종묵: 1864년에 이르러 (일본인들은) 영국인과 불국인에게 협박당하여 값에 따라 (수입)세액을 정하되 모두 5퍼센트를 징수하기로 하여 이제까지 18년 동안 행하여 왔으므로 크게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습니다. 5퍼센트를 징수할 것도 있고 10퍼센트를 징수할 것도 있고 10퍼센트를 징수할 것도 있으며 20퍼센트나 30퍼센트까지도 징수할 것이 있으니, 그 경중을 참작하여 하는 것이고 10퍼센트를 징수하는 것만을 기준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살필 곳입니다.

260 • 교과서 바로 보기

이들의 보고를 통해 조선 정부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서구 열강들이 자국의 수입관세율을 10~200퍼센트까지 책정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은 서구 열강의 무력에 의해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5퍼센트의 관세를 강요받았다. 셋째 낮은 수입관세율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수입관세율은 자주권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조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외국과의 조약 체결 협상에 임하였다. 1881년 말 수신사 조병직은 일본과 통상협상 과정에서 5~35퍼센트의 수입관세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 정부의 조약 초안을 제출했다. 1882년 6월에 재개되었던 일본과 통상협상에서도 조선 정부는 조미조약의 통상조항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해서 10퍼센트와 30퍼센트로 차별화된 관세율의 적용을 주장했다. 1883년 3~5월에는 영국으로부터 10퍼센트, 30퍼센트의 수입관세율을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5퍼센트로 낮추고, 내지통상을 허용하는 등의 조영조약 개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 등을 이유로 영국의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로의 편입

1880년대 초반 조약체결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정책은 중국과 일본에 관철되었던 조약의 불평등성을 인식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에 관철시켰던 불평등조약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이 당시 초강대국이

19세기 후반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 과정 • 261

었던 영국과 조약개정 협상 끝에 1883년 11월 26일 체결한 조영수호 통상조약에 있었다.

원래 조선과 영국은 중국의 주선으로 1882년 6월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내용은 조미조약과 동일한 것으로, 수입관세율이 상품에 따라 10퍼센트와 30퍼센트로 차별화되어 규정되었으며, 육지에서 영국인들의 통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이 중국에 관철시켰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5퍼센트의 수입관세율 적용과중국 내륙에서 영국인들이 통상 허가(일본에서는 금지)를 받았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그런 이유로 동아시아 주재 영국상공회의소(요코하마, 홍콩, 상해)에서는 1882년 체결한 조영조약을 반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83년 10월 말 북경 주재 영국공사 파크스가 직접 조선으로 건너왔다. 40여 년동안 중국, 일본에서 활약했던 그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조영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 초안을 작성하여 조선 정부에 제출했다. 그가 작성한 초안은 영국을 선두로 한 서구 열강들이 중국, 일본, 조선에 강요했던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집약한 것이었다.

먼저 파크스는 중국과 일본에서 적용되었던 저율의 수입관세율을 적용시켰다. 그리고 양국 합의에 의해서만 관세율을 조정하게끔 명문화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파크스는 중국과 일본에서 적용되는 치외법권을 근거로 총 10항으로된 치외법권 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그는 조선에서의 영국인들에게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사건에서 조선의 사법기관이 개입할 근거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는 미국인과 일본인이 조선에서 적용받는 치외법권의 내용보다 훨씬 정교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중국과 일본에서 누렸던 최혜국대우 조항을 초안에 적용시켰다. 이를 통해 영국은 조약 체결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을 이익의 균점이 라는 논리로 관철시키고자 했다. 즉 파크스가 작성한 조약 초안은 사 실상 중국, 일본에서 영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어 놓은 조약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파크스는 1883년 11월 조선 정부와 조약 협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 언하였다.

조영조약의 초안은 중국, 일본에서 오랜 경험의 결과물이며, 중국과 일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조선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1883년 11월 파크스 -

파크스는 자신이 제출한 조약의 초안이 중국과 일본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들어 초안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물론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초안이 영국의 이익만 대변할뿐, 중국과 일본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그는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되는 조약체제가 사실상 조선에게 나쁜 점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 정부에 조약 초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 파크스의 이러한 말들은 역설적으로 이 조약체제를 거부한다면결코 조선에 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20여 일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파크스가 제시했던 영국의 주요 수출품(면제품과 주요생필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7.5퍼센트로하자는 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얼핏 보기에 수입관세율 7.5퍼센트는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상

은 그렇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항구에서 걷는 수입관세율 5퍼센트와 육지통행세 2.5퍼센트를 합한 7.5퍼센트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 었다. 일본의 경우는 비록 중국과 같은 육지통행세는 없었지만, 영국 상인들은 중국, 조선과 달리 일본의 내륙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조선에 제안했던 7.5퍼센트 수입관세율은 중국, 일본에서 적용되 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초 조선 정부는 7.5퍼센트의 수입관세율을 8퍼센트로 인상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공사 푸트는 7.5퍼센트의 수입관세율이 조선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종과 당시 조약체결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민영목에게 충고했다. 그래서 민영목과 조선 측 관리들은 7.5퍼센트의 영국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선에서 관세율 협상을 마무리했다.

1883년 11월 26일 조선 정부는 영국 안을 대폭 수용한 조영수호통상 조약에 조인했다. 그 결과 영국은 조선을 중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자국의 생산품을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정교화된 치외법권 조항을 통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국민들이 조선에서 조선의 법망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조약을 비준했던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조선에 조영조약의 최혜국 대우 적용을 요구했으며, 독일 · 러시아 · 이탈리아 · 프랑스역시 조영조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약을 조선에 관철시켰다.

조선 정부는 1880년대 초반 근대적 조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조약 교섭에 임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인식의 범위는 통상에 제한되어 있었다. 당시 관세자주권 상실과 함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핵심을 이루었던 치외법권 조항과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책은 극히 미비한 것이었다. 불평등조약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했던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모든 국가들에게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당시 국제법 논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까지 했다. 즉 조선은 서구 열강의 침략논리에 충실했던 국제법에 대한 믿음과 불평등조약체제를 보는 거시적 안목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은 1883년 11월 조영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서구열강들이 관철시켰던 불평등조약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불평등조약체제의 구체적 양상

1883년 11월 파크스는 조선과 협상 초기에 동아시아에서 적용되는 조약체제를 조선이 받아들이는 것은 조선에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 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조약 체결 직후 조선의 상황은 파크스의 예상 에서 빗나가고 있었다. 조약 체결 직후 조선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일단 조선의 수출이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이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가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 은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외환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폐해를 겪게 되었다. 1881년 이헌 영과 민종묵이 경고했던 내용이 조선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19세기 후반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 과정 • 265

1885~1893년간 조선의 수출입 통계(전체)

총수일(a) 총수출(b) 무역수지(b-a) 1885 1,675,192 388,023 -1,287,169 1886 2,477,442 504,225 -1,973,217 1887 2,816,041 804,996 -2,011,045 1888 3,052,641 867,058 -2,185,583 1889 3,377,815 1,233,841 -2,143,974 1890 4,727,965 3,550,478 -1,177,487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1892 4,598,479 2,443,739 -2,154,740		1000 100021	 단위(Mexican_dollar)	
1886 2,477,442 504,225 -1,973,217 1887 2,816,041 804,996 -2,011,045 1888 3,052,641 867,058 -2,185,583 1889 3,377,815 1,233,841 -2,143,974 1890 4,727,965 3,550,478 -1,177,487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총수입(a)	총수출(b)	무역수지(b-a)
1887 2,816,041 804,996 -2,011,045 1888 3,052,641 867,058 -2,185,583 1889 3,377,815 1,233,841 -2,143,974 1890 4,727,965 3,550,478 -1,177,487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1885	1,675,192	388,023	-1,287,169
1888 3,052,641 867,058 -2,185,583 1889 3,377,815 1,233,841 -2,143,974 1890 4,727,965 3,550,478 -1,177,487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1886	2,477,442	504,225	-1,973,217
1889 3,377,815 1,233,841 -2,143,974 1890 4,727,965 3,550,478 -1,177,487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1887	2,816,041	804,996	-2,011,045
1890 4,727,965 3,550,478 -1,177,487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1888	3,052,641	867,058	-2,185,583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1889	3,377,815	1,233,841	-2,143,974
	1890	4,727,965	3,550,478	~1,177,487
1892 4,598,479 2,443,739 -2,154,740	1891	5,256,788	3,366,344	-1,890,444
	1892	4,598,479	2,443,739	-2,154,740
1893 3,880,155 1,698,116 -2,182,039	1893	3,880,155	1,698,116	-2,182,039
합계 31,862,518 14,856,820 -17,005,698	합계	31,862,518	14,856,820	-17,005,698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부여했던 치외법권 조항 역시 조선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1891년 8월 조선정부는 2~3년 전부터 일본인들이 제주도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어민뿐만 아니라 부녀자까지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여 피해가 극심하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제주목사는 정부에게 적절한 대책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자국민을 적 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 취한 최선의 조치는 고작 일본공사에게 알려서 이를 처리할 것을 부탁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는 치외법권의 적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1895년 일국의 왕비인 명성왕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조선 정부는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단지 조선 정부는 치외법권에 의거해서 일본 정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조약 체결 전의 국내외 정세

- 。 청나라는 1842년 남경(난징)조약, 일본은 1854년 미일화친조약 체결로 개항
- 한국도 비슷한 시기 서양과 접촉, 충돌

병인양요(1866)

- 。배경: 병인박해, 1866년초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리고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명을 처형. 프랑스 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은 화를 면하였는데, 그 중리델(Ridel) 신부는 중국으로 탈출하여 주중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Roze, P.G. 로세(魯勢)]에게 박해소식을 전하면서 보복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침입하였다.
- 。 1차 원정: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한양까지의 수로를 탐사하기 위한 예비적 탐사원정. 로즈는 군함 3척을 이끌고 9월 18일부터 10월1일까지 한양의 양화진(楊花津), 서강(西江)까지 올라와서 세밀한 지세정찰과 수로탐사를 한 끝에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다.
- 。 2차 원정: 로즈는 10월 5일에 한강 봉쇄를 선언하고, 10월 11일에 제2차 조선 원정길. 군함 7척, 함재 대포 10문, 총병력 1,000명 향도 및 수로 안내인으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선일(崔善一), 최인서(崔仁瑞), 심순여(沈順汝) 등 3명을 대동하고 강화도로 내침. 10월 16일에 강화부를 점령하고, "우리는 자비로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동포 형제를 학살한 자를 처벌하러 조선에 왔다." 라는 내용의 포고 문을 발표. 강화도 수비에 실패하여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정부는 순무영(巡撫營)을 설치, 대장에 이경하(李景夏), 중군에 이용희(李容熙), 천총(千總)에 양헌수를 임명하고, 출정하게 하였다. 양헌수는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다가 천총(千總)에 임명되어, 대군을 이끌고 통진부(通津府)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계획을 구상하였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에 문수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하였다.
- 。 정족산성 전투: 양헌수는 화력 면에서 절대열세인 조선군의 전력을 고려하여 강화도 수복 계획을 세웠다. 양헌수의 군대 549명이 덕포에서 프랑스군에 들키지 않고 한밤중에 잠도작전(潛渡作戰)으로 강화해협을 건너 11월 7일 정족산성을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양헌수는 정족진을 결성한 뒤, 남문과 동문에 각각 포수 161명, 150명을 배치하고, 서문과 북문에는 경군(京軍) 및 향군(鄉軍) 157명을 배치, 매복하시켰다. 조선군이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Ollivier)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하였다. 11월 9일 올리비에는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다. 조선군이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에게 일제히 포격을 가함으로써 일대격전이 벌어졌다. 연전연패하였으나 강화 지형에 익숙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격퇴.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프랑스군 철수.

신미양요(1871)

- 。미국의 아시아함대가 1866년 8월의 제너럴셔먼호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강화도 침략
- 。배경: 미국은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서 있었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개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 경과: 1871년 미국은 조선을 개항하기 위하여 조선 원정을 결행하였다. 미국은 주청미국공사 로우(Law, F.F.)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는 해군함대를 동원하여 조선 원정에 나섰다. 로저스는 서울로 가기 위한 수로를 탐색하려고 조선 대표에게 강화해협을 탐측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6월 1일 강화해협의 탐측항행을 강행하였다. 함대가 손돌목에 이르자 강화의 남장포대와 김포의 덕포포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조선과 미국은 최초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를 손돌목포격사건이라 한다. 손돌목포격사건 직후 미국 대표는 조선 측에게 평화적으로 탐측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군함대에 대한 포격은 비인도적 야만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선 대표를 파견해서 협상할 것, 포격사건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조건을 거부하면 10일 후에 보복상륙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 조선 측은 협상 거부.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6월 10일 초지진에 상륙작전 시작. 10개 중대로 상륙군을 편성하고, 포병대, 공병대, 의무대, 사진촬영반 등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해상 함포사격으로 초지진을 초토화시킨 뒤 수륙양면공격으로 초지진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6월 11일에는 덕진진을 무혈점거하였고, 이어서 광성보 전투가이어졌다. 광성보에는 진무중군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수비병 60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이 광성보에대한 수륙양면 포격을 한 시간 동안이나 벌인 끝에 광성보는 함락되었다. 조선군은 수자기를 빼앗겼으며, 미군은 광성보에 성조기를 게양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전사 350명, 부상 20명이었고 미군은 전사 3명 부상 10명이었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

서계 문제

- 。메이지 신정부는 쓰시마번(대마도)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조선정부에 대하여 천황정권의 성립과 신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고하도록 명령
- 。쓰시마번은 조선국 담당관리의 양해를 얻기 위하여 정식 사절(大修大差使)의 파견에 앞서 선발관원(幹事裁判)을 파견하기로 결정 <-- 가까운 시일내 정식 사절을 파견하여 왕정복고를 통지한다는 사실과 외교문 서에는 신정부가 수여한 도서(圖署, 新印, 즉 새로운 인장)를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
- 。 그러나 조선측은 외교 격식에 어긋나는 사실임을 들어 서계의 접수를 거부
- 。메이지 정부는 1870년 1월 7일 사다 하쿠보(佐田白茅)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을 조선에 파견, 조 선정부가 최종적으로 서계 접수를 거절한 것을 확인 --> 일본 조야에서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이 비등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 제1안은 조선과 단교하여 사태를 방임한다는 단교론(斷交論)
- 。 제2안은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조선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안
- 。 제3안은 조선과의 수교에 앞서 청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한 다음 조선과 교섭한다는 우회적으로 접근 하는 안

고종의 친정과 대외정책

- 。 대원군 실각, 고종 친정
-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 1874년 9월 3일 현석운과 모리야마는 국교재개 문제에 대해 회담

운요호사건과 조선정부의 대응

- , 모리야마 일행은 조선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것을 제안
- 。4월 20일 운요호가 부산에 입항, 5월 9일에는 군함 다이니테이보호(第二丁卯號)가 부산항으로 들어와 운요호와 합류
- . 8월 21일 운요호가 한강 하구 강화도 해안에 정박하였다가 선원 일부가 작은 배로 사전 예고없이 한강 하구를 거슬러 항해 --> 초지진 포대에서 포격을 감행, 운요호는 함포사격으로 초지진을 파괴

강화도조약의 체결 과정

- 。 조선 정부는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파견(부관 윤자승)
 - 1차 회담: 운요호 사건의 책임을 물음
 - 2차 회담: 13개 조항의 조약 초안서를 제출하며 조약체결을 요구
 - 3차 회담: 회답 지연시 무력 사용을 통고
- 。이후 신헌은 일본측과 조약문 내용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월 3일 조약을 강정하고, 2월 6일 조인식

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성격

。강화도조약체제: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에서 조인하였던 < 조일수호조규 > 와 같은해 8월 24일 체결하

- 。 조일수호조규는 전문(前文)과 12개 조관으로 구성
 - 1관 조선국(朝鮮國)은 자주국(自主之邦)이며 일본과 더불어(與日本國)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유(保有平等之權)한다. -->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자 하였기 때문
 - 제2관 종래의 외교관행 변경에 관한 조항 --> 사신의 상대국 수도 체류기간과 파견시기 등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 실질적으로는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나아가 상주외교공관 설치가가능
 - 제3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관한 규정--> 일본은 일본어를 사용하며,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결정. 표의문자인 한문 해석에 있어 조·일 양국의 해석이 상치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자국어의 해석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4관&5관 개항장의 선정과 설치 및 운영의 대강에 관한 조항 --> 일본은 향후 조선땅에서 그들 만(외국인)의 전관 거류지 즉 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5관은 부산 이외에 추가로 2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약속한 조항
 - 제7관 조선 연근해의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고 측량자료를 가지고 지도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8관&9관&10관
 - 、'시의(時宜)에 따라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관리를 설치'--> 개항장에 언제든지 '영사관'을 설 치하여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계되는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음
 - 、9관 상업 활동 중 정당하지 못한 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리가 이를 조사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의 의무 등은 지지 않음
 - 、10관 개항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인에 대한 조사 처벌은 자국의 관리가 이를 담당 하여 공평하고 타당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규정
 - --> 조선은 이들 조항에 의하여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들을 체포하거나 조사 또는 처벌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 --> 조약의 체결 후 비준 절차에 대한 규정없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 。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의해 개항 이후, 서양열강과의 통상교섭 확대
 - →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1878년부터)
 - 1880년 최초의 신식 정부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 설치
 - 1881년 신식 군대인 별기군 창설

1) 임오군란

- 。 임오군란의 배경; 왜 이런 일이 생겼나?
 - 개항 후 일본과의 무역구조: 도시 하층민들에게 집중적인 피해
 - 하급 군병들의 생활조건: 군병들의 급료 지급 문제, 별기군의 창설로 실직 및 도태에 대한 위기의식
- 。 발단: 1882년 6월 5일 이른바 도봉소 사건
- 。전개과정
 - 정부는 무위대장 이경하를 파견, 설득 및 회유 시도
 - 저항운동의 주요 공격목표: 민씨 척족 세력(명성황후) & 일본(상권독점 및 곡물 유출)
 - 일본 공사관 공격
 - : 흥선대원군 재집권
- 。 청과 일본의 개입
 - 청국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 흥선대원군 납치
 - 종주권을 주장, 조선 속방화를 위한 적극 간섭정책
 -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2) 갑신정변

- 。 갑신정변의 배경
 - 청국의 조선 자주독립의 침해
 - 개화파의 자주근대화정책에 대한 청국 및 민비 수구파의 저지와 탄압
 - 개화파의 구상: 구미세력을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고자, 그러나 구미 열강과의 국교 수 립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
- 。 갑신정변의 전개과정
 -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봄
 - 1884년 여름, 국제정세가 '정변' 단행에 유리하게 전개: '청·불전쟁'
 - 1884년 8월 '청·불전쟁' 발발 → 일본 공사관의 갑작스러운 지원
 - 1884년 10월 11일~10월 14일, 거사 횅동 계획 수립
 -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서 거사 단행, 이튿날 혁신정강 발표
- 。 혁신정강 14개조: 개혁정치의 의지와 기본내용 집약

- 제1조는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거부함과 동시에, 1882년 이전의 조공허례의 의식도 폐지할 것 → 자주 독립국가 지향
- 제2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rightarrow ①양반신분제도의 폐지에 의한 국민평등 권리의 제정, ②문벌제도의 폐지, ③인재의 등용
- 제13조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과, 제14조 '정부는 六曹 외에 무릇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과, 제4조 '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①내각제도의 수립, ②정부조직의 개편 등의 정책 대강
- 제12조 '모든 국가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일체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과, 제3조 '전국의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재정을 유족케 할 것'과, 제6조 '각 도의 還上制度는 영구히 폐지할 것'과, 제9조 '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①재정의 호조로의 통일, ②지세제도 개혁을 비롯한조세제도의 개혁, ③환자(환곡)제도의 폐지, ④보부상 등 전근대적 특권상업제도의 폐지, 근대적 자유산업을 장려하고 재정제도와 경제제도를 근대적 방향으로 개혁
- 。 청국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
 - 일본 측의 입장 변경
 - 청국 군대의 공격 시작
 - → '3일 천하'
- 。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 ① 청군의 불법적 범궐과 군사적 공격
 - ② 일본군 借兵의 실책과 일본군의 배신적 철병
 - ③ 개화 정책을 지지할 사회계층으로서의 시민층의 미성숙
 - ④ 명성황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정변수행 기술의 미숙